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2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 2. 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2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22호, 2017. 4. 7.)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수입검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박람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 대상 품목 중 축산물 제외 (안 제7조제4호)

축산물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고시를 적용받고 있으나, 동 고시 적용 대상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축산물의 적용 제외를 명문화함

나. 조건부 수입신고 수리한 식품에 대하여 지방청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입고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점을 조정 (안 제8조의2제1항 제1호)

조건부 수입신고한 식품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이후 확인하도록 확인 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

다.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4])

- 1)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중국산 양파등 농·임산물 8개 품목과 호주산 과실주 등 가공식품 6개 품목을 인정범위에 추가
- 2) 유통단계와 수입단계에서 각각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자몽과 토마토 케첩 등 2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6-154호, 2017. 7. 1.자 시행)에 따라 기준이 강화 또는 변경되는 브라질산 갈색설탕,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2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3. 의견 제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scho2@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00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2호, 2017. 4. 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월 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본문 중 “수입식품 등”을 “수입식품 등(축산물 제외)”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일 이내”를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재지의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로, “식품등의”를 “식품등이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4 I. 9를 삭제하고, 22부터 2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양파	중국
23	아몬드(탈각)	미국
24	브로콜리	중국

25	과	중국
26	월귤(블루베리)/열매	칠레
27	커피	과테말라
28	황기(단너삼)/뿌리	중국
29	과파야	필리핀

별표 4 Ⅱ. 9, 10과 18을 삭제하고, 11과 14의 국가란 중 “카나다”를 “캐나다”로 하며, 19부터 2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과실주	호주, 아르헨티나
20	맥주	독일, 미국, 벨기에
21	연육	베트남
22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미국
23	캔디류(젤리)	미국
24	당절임	미국

별표 4 Ⅲ. 11의 국가란 중 “인디아”를 “인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검사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u>수입식품 등</u>.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p> <p>제8조의2(조건부 수입신고) 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이하 “조건부 신고수리”라 한다)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p> <p>1.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업장소 또는 보</p>	<p>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 ----- <u>수입식품 등(축산물 제외)</u>. ----- -----.</p> <p>제8조의2(조건부 수입신고) ① ----- ----- ----- ----- ----- ----- -----.</p> <p>1. ----- ----- -----</p>

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식품등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2. 3. (생 략)
- ② (생 략)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I. 농 · 임산물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8	(생 략)	(생 략)
9	자몽	미국
10~21	(생 략)	(생 략)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 지방청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소재지의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식품등이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2.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I. 농 · 임산물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0~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2	양파	미국
23	아몬드(탈각)	미국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II. 가공식품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8	(생 략)	(생 략)
9	갈색설탕	브라질
10	강력밀가루	호주
11	영양강화밀가루	캐나다
12~13	(생 략)	(생 략)
14	조제커피	캐나다
15~17	(생 략)	(생 략)
18	토마토케첩	미국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III. 식품첨가물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10	(생 략)	(생 략)
11	파프리카추출색소	인디아
12~16	(생 략)	(생 략)

24	브로콜리	중국
25	과	중국
26	월귤(블루베리)/열매	칠레
27	커피	과테말라
28	황기(단너삼)/뿌리	중국
29	파파야	필리핀

II. 가공식품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1	영양강화밀가루	캐나다
12~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조제커피	캐나다
15~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9	과실주	호주, 아르헨티나
20	맥주	독일, 미국, 벨기에
21	연육	베트남
22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미국
23	캔디류(젤리)	미국
24	당절임	미국

III. 식품첨가물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파프리카추출색소	인도
12~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